

대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- 2020호

『대전 우주기술 연구·활용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(안)』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『대전 우주기술 연구·활용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(안)』 열람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26.

대 전 광 역 시 장

1. 특구 개요

- 가. (명 칭) 『대전 우주기술 연구·활용 규제자유특구』
- 나. (목 적)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특성에 맞는 기준 정립·실증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
- 다. (위치·면적) 대전광역시 유성구, 대덕구 일원 / 총 5,158,244㎡
- 라. (지정기간) 2025. 6. 1. ~ 2029. 12. 31.(4년 7개월)
- 마. (사업내용)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안전 및 시험(인증) 체계 정립을 위한 실증

2. 특구 변경 계획(안) 주요내용

-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
 - 실증특례 근거법령, 부대조건 등
 - ※ 대전 우주기술 연구·활용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(안) : 「붙임 1」

3. 공고기간 : 2026. 3. 26.(목) ~ 2026. 4. 10.(금)

4. 열람 기간 및 장소

가. 열람기간: 2026. 3. 26.(목) ~ 2026. 4. 10.(금)
(09:00 ~ 18:00, 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
나. 열람장소

- 대전광역시 국방우주산업과 우주항공산업팀(전화 : 042-270-4142)
(대전 서구 둔산로 100, 8층(둔산동))
- (재) 대전테크노파크 우주·양자산업센터(전화 : 042-930-4311)
(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무선통신융합지원센터 211호)

5. 의견제출

가. (제출기간) 2026. 3. 26.(목) ~ 2026. 4. 10.(금) 18:00까지

나. (제출방법)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붙임 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- 방문 : 대전광역시 국방우주산업과 / 대전 서구 둔산로 100, 8층(둔산동)

※ 2026. 3. 30.(월) ~ 2026. 4. 10.(금) 09:00 ~ 18:00, 단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

- 이메일 : 대전광역시(evergreen79@korea.kr),
대전테크노파크(syo@djtp.or.kr)

6. 공청회 개요

가. (개최목적) 『대전 우주기술 연구·활용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(안)』에 대하여 관계전문가, 주민,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

나. (일 시) 2026. 4. 17.(금) 14:00

다. (장 소)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플라자 대강당

(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)

라. (특구 변경개요) 공고문 「붙임 1」 참고

7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국방우주산업과(042-270-4142) 또는 대전테크노파크 우주·양자산업센터(042-930-431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대전 우주기술 연구·활용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(안)

□ 특구지정 개요

- (목 적)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특성에 맞는 기준 정립·실증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
- (위치/면적) 대전광역시 유성구, 대덕구 / 5,158,244m²
- (사 업 자)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1개 기업·기관
- (지정기간) '25. 6. ~ '29. 12.(4년 7개월)
- (세부사업)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 기술기준 정립 및 시험·실증으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

□ 지정변경 내용

-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대 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제품) 용기, 냉동기, 특정설비 / (시설) 제조, 저장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제품) 용기 등
규제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5항, 제5조제1항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제1항, 제20조제1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우주개발진흥법」 제18조(필요시 조문 신설), 「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」 제2조, 제10조, 제19조 ※ 본 규제자유특구사업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, 「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」에 근거해서 실증한다.
부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고법준수) 고압가스법에 따른 제조 등록,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* (제품) 제조등록, 제품검사 등 (시설) 인·허가, 완성·정기검사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삭제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타법준수) 해당 실증 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 또는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삭제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안전성평가)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실증사업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·적용 *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준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삭제)

구 분	당 초	변 경
부대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실증안전기준) 고압가스법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고압가스법의 관리체계를 준수 <p>* (제품)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10, 10의2, 11, 12 등 * (시설)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4, 8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실증안전기준) 미국, 유럽, 일본 등 해외 시험·검사기준을 준용하고 국제 표준을 참고하여 우주항공부품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실증안전기준 마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 <p>*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안전관리계획) 실증안전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, 이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의 해소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 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안전위원회)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실증 前) 안전성 평가, 실증안전기준,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· (실증 中)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· (실증 後)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안전위원회)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검증 내용 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실증 前) 안전성 평가, 실증안전기준, 안전관리계획 및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· (실증 中)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실증사업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· (실증 後)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</div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자료제공 협조)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보고·승인) 안전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안전성 검증 내용 및 결과를 우주항공청에 보고·승인 요청

【변경사유】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지상에서 관리되는 고압가스 용기, 냉동기, 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동 실증사업은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의 제조,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움
- 이에 따라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배제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별도의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

